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2월 3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1월 15일

나. 제 출 자: 강선영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1년 1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1.2.3.)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강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2)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제4조)

○ 구청장의 책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적극 추진

○ 구민의 책무: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 제5조)

4) 노인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5)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6) 사업비 지원의 근거규정 (안 제8조)

7)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1. 1. 15. ~ 1. 20.) 결과: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서선옥)

○ 본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장

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 용어 정의에서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와 같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학대피해노인"은 제2호의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으며, 구민의 책무로는 노인학대 금지 규정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원조달 방법
  -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의규정)
- 안 제6조의 실태조사에서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7조는 예방교육으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렵체계 구축
- 안 제10조는 관련 종사자의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음.
-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및 노인학대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2020년에 발표한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으로 노인인구 1만 명당 노인학대 13.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자료 참고

- 강서구의 2020년 12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88,733명[1]으로 위 조사결과에 반영할 경우 연간 117건 이상의 노인학대 신고 발생의

1) 강서구 인구통계 (2021.1.4.)

우려가 있으며, 신고되지 않는 사례까지 감안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 됨.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노인학대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매년 1시간 이상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4시간이상 노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실시 결과를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강서구에서는 지난 2020년 10월 7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 상위법령 상 노인학대의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이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심으로 되어있어 우리구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의 활성화 등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어르신 인권보호 및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바

○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붙임 1)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1부.

2) 관계법령 1부.

참고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

❏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 학대피해 노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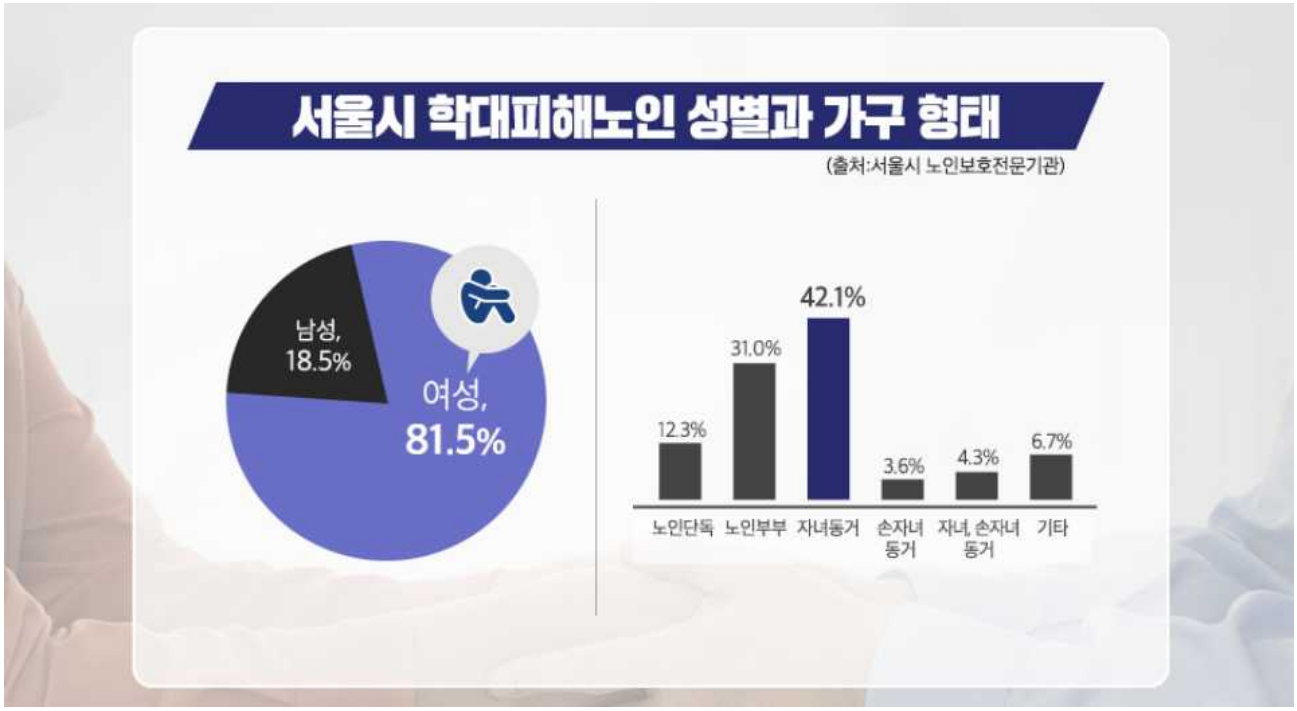

※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2020.06.16.)”

❏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구분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남부	북부	서부	
운영법인	(재)천주교까리따스 수녀회유지재단	(사)참누리	(사)오병이어 복지재단	(사)참누리 (북부노인전문기관)
소 재 지	서초구	강북구	은평구	-
운영인력	10명 (기관장1, 상담원8, 교육담당1)	10명 (기관장1, 상담원8, 교육담당1)	9명 (기관장1,상담원7 교육담당1)	6명 (기관장1,상담원2, 요양보호사3) ※북부 겸직(기관장, 상담원1)
관할구역	강남지역(9개구) (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 영등포,동작,금천,관악)	강북지역(8개구) (강북,도봉,노원,성북, 동대문,중랑,성동,광진)	서부지역(8개구) (은평,서대문,종로,중, 마포,양천,구로,강서)	서울시 전지역
개소년월	2004.12.	2011.7.	2018.12.19	2017.11.
예산('20)	501,536천원	484,840천원	441,406천원	188,224천원
주요업무	• 노인학대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조사**(☎1577-1389) • 학대 어르신에 대해 의료기관 및 일시보호시설 의뢰, 사후관리 등 •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학대피해 어르신 보호 및 숙식제공 •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제공 •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등 ※입소정원 : 5명

참고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생략)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

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2조(노인 학대 예방) 구청장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3.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4. 노인 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